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 기타 안내사항

1. 인력풀 등재 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 비위 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2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2. 유의사항

가.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으로 계약제교원 임용을 보장하지는 않음

나. 면접 및 채용 계약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짐

다. 원활한 인력풀 운영을 위해 '채용 여부'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라.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다음 해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미채용'으로 변경

마.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를 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 등재자의 직접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 면접 합격 후 채용 계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

3. 계약제교원 인력풀 현행화

가. 방법: 등재자가 사유 발생 즉시 메일로 요청

- 메일 기재사항(예시)

대상자	채용구분 및 사유	계약 기간	비고
000 (등재번호 2022-1)	기간제교원(또는 시간강사) 임용 22.9.1.자 신규 교사 임용 기타 개인적인 사유	2022.3.1. ~ 2022.3.31. (1개월)	

- 메일주소: dalki9981@korea.kr(유, 초, 특), bemysiin@korea.kr(중등)

나. 현행화 요청 사유

- 인력풀에 등재된 채용 기간이 만료된 후 김포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 타 시·도 또는 시·군 소재 학교에 채용된 경우
- 정규 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계약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가. 등록 유효기간 및 재등록 기간

- 인력풀 등록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미갱신 시 삭제 처리
- 단, 임용 상한연령(만 62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한 날(매년 2월말일 또는 8월 말일)까지
- 재등록 기간은 유효 만료연도 9월~12월까지이며 재등록 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서류)만 제출
- 인력풀 등록연도 별 등록 유효기간 및 재등록 기간

등록연도	접수(등록)번호	유효기간	재등록 기간
2022년	유/초/중/특/비교과 - 22 - 0000	2025. 12. 31.	2025. 9월 ~ 12월
2023년	유/초/중/특/비교과 - 23 - 0000	2026. 12. 31.	2026. 9월 ~ 12월
2024년	유/초/중/특/비교과 - 24 - 0000	2027. 12. 31.	2027. 9월 ~ 12월

나. 인력풀 정보 및 제출서류 관리

구분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비고란에 추가 표기) ○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제출시기	학교행정지원팀에서 보관 중인 서류 이외의 추가 자격, 학력 및 경력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 사항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 '호봉획정 참고자료'에서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간제교원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제출	

- 제출한 서류는 학교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계약을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청 인력풀 담당자에게 접수번호 기재하여 내부메일로 서류 요청 시 사본 송부
(단, 송부한 서류 외 추가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직접 계약제교원에게 징구)
- 기타 사정 또는 등록유효기간 등이 지나 파기를 할 수 있는 경우 파기